

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
제 차 총무위원회 (2014. 12.)

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(안)

검 토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11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11. 21

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·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각 부서에서 설치·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거창군에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거창군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함.

3. 2015년도 기금개요

- 가. 관련근거
 - 지방자치법 제142조 : 재산과 기금의 설치
 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: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
- 나. 운용방침
 -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·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·운용하는 특정 자금임.
 - 자금 운용체계를 총괄부서와 운영부서로 이원화하여 책임성·투명성 확보
 - 총괄부서 : 기획감사실
 - 운용부서 : 각 기금관리운용 부서
 -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·운용

4.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

(단위 :백만원)

기 금 명	2014년말 현 재 액 ㉠	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2015년도말 조 성 액 ㉡=㉠+㉢-㉣	증감
		수 입 ㉢	지 출 ㉣		
합계 (4개)	5,426	194	248	5,372	△54
사회복지기금	3,781	163	211	3,733	△48
식품진흥기금	51	5	4	52	1
아름예술제진흥기금	502	13	13	502	0
체육진흥기금	1,092	13	20	1,085	△7

5. 검토의견

▣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기금(P13)

- 사회복지기금은 「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·운용조례」에 의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,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, 노인복지,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음
- 지원기준은 매년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하며,
 -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의 1인당 지원 기준액은 중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40만원,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각각 60만원을,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80만원을 지급
 -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자활공동체 및 개인의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함
 -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천재지변,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,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등을 지원

-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수의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익하고 호응이 좋은 사업과 노인의 심심단련 및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지원
- 여성발전 지원사업은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원함.
-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 말 현재액은 3,781백만원이며,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63백만원, 지출 211백만원임
2015년 말 현재액은 3,733백만원이 될 것으로 보며, 기금은 농협 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음

▣ 민원봉사과 식품진흥기금[p25]

- 식품진흥기금은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및 「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의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,
- 재원조성은 「식품위생법」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,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,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함
-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1백만원이며,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백만원, 지출 4백만원임

2015년도 말 현재액은 52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중앙회 군청 출장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

■ 문화관광과 아립예술제진흥기금[p31]

- 아립예술제진흥기금은 「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」에 따라 향토 문화·예술축제인 아립예술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,
-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아립예술제 행사 잉여금, 기타수익금 등으로 하고 있음
- 지원기준은 매년 아립예술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행사비 등 지원
-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02백만원이며,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3백만원, 지출 13백만원임.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02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.

■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진흥기금[p37]

- 체육진흥기금은 「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」에 의거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,
- 지원기준은 거창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영역으로 함
- 지원대상은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, 우수선수 육성 사업, 군민 체육대회 개최,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을 지원함.
-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,092백만원이며,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3백만원, 지출 20백만원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,085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치 관리하고 있음

■ 총괄 검토의견

- 기금 성과분석 결과 반영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,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운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
-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과 '적립성 기금'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한 경우 기금 존속 여부 검토
- 지방기금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중인 기금으로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기금은 조례개정을 통한 지방기금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효율성 제고
-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권장
-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과 예산을 절감
- 모든 기금은 매년 성과 분석을 시행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